

“곳곳 빈 절인데 사설사암 계속 증가”

중앙종회 <사찰법> 제정안 공청회

2011년 08월 25일 (목) 09:08:18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은 모두 2천 787개. 이중 사설사암은 전체의 66%인 1천 541개다. 사설사암이 공찰보다 많은데다가 신규 등록 사찰 역시 사설사암은 연평균 36개가 증가하는 반면 공찰은 15개에 불과해 사설사암이 공찰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또 전체 사찰 중 26%는 주지 임명도 되지 않는 등 사찰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사설사암은 급증하고 있지만 매매와 양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갈수록 종단의 관리권 밖으로 향하는 경향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을 구성하는 근간인 사찰의 등록과 관리를 규정할 <사찰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9월 19일 임시중앙종회 개회를 앞두고 특위에서 마련한 <사찰법> 제정안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과 토론, 청중의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법안스님이, 토론자로는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원혜스님(마곡사 주지), 지홍스님(중앙종회의원), 선암스님(적석사 주지), 경륜스님(석불사 주지) 등이 나섰다.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은 발제를 통해 <사찰법>의 구성과 골자를 설명했다. 스님은 “종단을 구성하는 근간인 사찰을 보존 계승하고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스님이 밝힌 <사찰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와 쟁점은 △사찰의 개념 정립 △사찰 등록 시 교구 확정문제 △공찰의 등록과 관리 문제 △사설사암의 등록과 관리 문제 △사찰의 예비등록제 도입 △창건주와 중창주 권리 △사지, 미입주 사찰, 관리대상사찰, 미등록 사설사암 문제 등이다.

특위가 마련한 제정안에는 사찰을 공찰,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 일반적인 정의 외에도 사실상 스님들의 거주공간이자 일부 사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종단의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이른바 ‘토굴’도 사찰에 포함시켰다.** 포교소와 산내암자도 분담금 납부 의무를 명시했다. 또 창건을 전제로 한 ‘예비등록사찰’ 제도를 도입, 무분별한 사찰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등록사찰 제도' 도입...사찰 난립 방지

쟁점인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사자상승에 의해 1인에게 승계'되며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매매, 양도할 경우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창건주 권리자가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입적한 경우에는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승계자를 정하고 도제가 없을 경우에는 창건주의 사형사제의 동의를 받아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창건주가 신도인 경우에는 권리를 본인에게 한정하고 사후 공찰로 귀속토록 했다. 창건주 권리자가 타종단으로 이적 또는 탈종하거나 임의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찰로 귀속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설사암을 공찰로 전환할 경우 중창주 권한을 인정해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예비등록사찰' 제도를 도입했다. 주지조차 없는 '빈 사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사설사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찰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인근에 사설사암을 창건해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다. 사찰을 창건할 때 신도시 등 포교거점지역에 사설사암을 전략적으로 창건할 수 있도록 해 사설사암이 사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개인 토굴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특위가 마련한 제정안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토굴'에 대해 규정 한다면 관리 방안에 마련되어야 하며 토굴은 중무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승려사후재산중단등록, 승려복지법 등을 통해 관리해 사전 종단에 등록해 사후에 속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담스님은 또 "공찰의 경우에도 대규모 중창을 했을 경우에는 (사설사암에 적용하는)중창주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설사암 개인토굴화 막아야

이에 대해 법안스님은 "토굴이라고 부르지만 너무 큰 규모"라며 "부처님도 모시고 땅도 있는데 절보다 큰 토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제정에는 토굴이라는 이름만이라도 포함시킨 뒤 토굴과 사찰의 범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덕문스님도 "호법부장을 지내며 미등록 사설사암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토굴인지가 불명확해 시시비비가 있었다"며 '토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은 무분별한 사설사암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신도시, 포교전략 요충지에는 사찰이 적지만 주지로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사설사암을 창건해 기존 전통사찰에는 신도가



▲ <사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열렸다.

줄어들고 사설사암으로 신도들이 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예비등록제의 시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를 지내면서 근처에 신도들과 함께 땅을 매입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설사암을 창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략 요충지에는 절이 없고 기존의 절 근처에 절이 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석사 주지 선암스님은 사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스님은 “생계형 사찰로서 역할밖에 못하는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오래 말사 주지를 했지만 3명 이상 함께 살아본 적이 거의 없고 부전을 구하려면 몇 번씩 구인광고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들이 대부분 주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중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예비 등록제를 철저히 해서 왜 그곳에 절을 세우려하는 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며 “포교와 전법 등 사찰의 정의에 충족하는 원력으로 사찰을 창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보장 등을 위해서, 또는 시주 하겠다는 신도를 따라서 그냥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사암 창건이 지역사회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창건만큼 폐사까지도 책임져야”

선암스님은 이와 함께 “관리대상 사찰이 부지기수”라며 “이제는 도리어 종단도 부담스러운 사찰로 남았다면 그 사찰을 창건한 스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창건 못지않게 마지막 폐사까지도 스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 석불사 주지 경륜스님은 창건주 권한을 사자상승으로 제한하는 <사찰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경륜스님은 “종현에는 창건주 권한이 사자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주지직을 사자상승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석불사는 1962년 종단에 등록했고 창건주 승계는 너댓 번 했지만 석불사에 3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사찰 내부 규약 상 상좌에서 사찰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사설사암이 안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창건주 권한 승계를 사자상승으로 제한 할 경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안스님은 이에 대해 “사설사암으로 3백년, 5백년 간다면 사찰의 공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늘 권속과 도제에 의해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공찰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창건한 이들의 의지가 수백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백년도 사설로 가겠다면 종단은 계속 사설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경륜스님은 그러나 “종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공찰 주지를 얼마나 임명해 주는가”라는 말로 사설사암에 대한 비구니 스님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전달했다.

“비구니에 공찰 얼마나 주기에...”

스님은 또 “공찰 바로 옆에 사설사암을 예비사찰등록제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종단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객석의 지적에는 “다른 종단에 등록하겠다면 가는 게 낫다. 종단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청회에서는 이밖에도 사지 복원 과정에서의 문화재 훼손 문제, 사찰의 사회적 역할, 공찰의 사설사암화, 능사 등 위탁운영사찰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찰법> 제정 공청회는 <승려법> <교육법> 등과 같이 종단의 수행전법의 공간이자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사찰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을 포괄하는 사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정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는 20 여명의 스님이 참석해 사부대중의 충분한 의견개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찰법> 제정안이 중앙종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된다. 중앙종회 종헌준법특위는 내달 19일 임시중앙종회 개회 전까지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친 뒤 <사찰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18>